

2025년 아동·가족 예산 분석

Analysis of the 2025 Budget for Children and Families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연구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의 아동·가족에 대한 공적지출 개념을 적용하여 파악했을 때, 2025년 국가재정에 반영된 아동·가족 예산은 2024년 대비 약 1.3조 원 증가한 20.7조 원으로 책정되었다. 긴축재정 속에서도 고용·복지·보건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7개 범주별 세부 분석 결과 실질적인 정부 재원 투입은 제한적이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3개 사업의 예산 감액이 전체 감액분의 78.5%를 차지한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33개로 이중 모성보호육아지원과 영유아보육료지원이 각각 전체 예산 증가의 62.3%와 23.2%를 설명한다. 영유아보육료지원 예산 증가는 상당 부분 국고보조율 인상의 결과로, 실제 아동 양육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즉 2025년 아동·가족 예산 증가의 상당 부분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양육 가구는 그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비록 재정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아동 양육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2024년 12월 10일 국회는 2025년도 국가 예산을 확정하였다. 국가 총지출은 673.3조 원으로 전년보다 약 16.7조 원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아동·가

족지원 사업예산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에는 전년 대비 약 9.8조 원 증가한 229.1조 원이 배분되었고, 유아교육비가 포함된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약 3.9조 원 증가한 98.5조 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우호적이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관

[표 1] 아동·가족지원 관련 부문의 자원배분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증감	
		정부 예산안(B)	확정예산(C)	국회조정(B-A)	전년대비(C-A)
총지출	6,566,182	6,774,107	6,733,016	-41,091	166,833
사회복지분야	2,193,226	2,292,257	2,290,686	-1,571	97,460
아동·보육 부문	61,192	52,326	52,304	-21	-8,888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16,861	17,769	17,383	-386	522
교육분야	945,944	984,719	984,633	-86	38,689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784,992	813,807	813,807	0	28,816
-유아교육 및 보육료지원 등	79,813	84,735	84,735	0	4,921

출처: “세출_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총지출)”, 기획재정부, n.d.,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fiscaldata.go.kr>, 접속일 2025. 2. 2. 기초로 작성.

련 분야 예산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아동·보육 및 여성·가족·청소년 2개 부분과 유아교육·보육료지원에 배분된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약 3445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그러나 이는 국가예산회계시스템 분류를 통해 가능하는 결과로, 실질적인 아동·가족지원 관련 사업예산의 변화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아동·가족 예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지출 범위를 확정하여 관련 재원의 배분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아동·가족 예산의 정의와 분류 기준

가. OECD 아동·가족 예산의 기준과 지출 범위

1) OECD 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

OECD는 1990년부터 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¹⁾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지출은 “공공과 민간기관이 복지에 불리한 영향에 노출된 개인과 가구에게 급여나 재정적 기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의 지급이나 혹은 개별 계약 또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지출은 1) 급여 하나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고 2) 급여 제공을 규정하는 프로그램은 개인 간 재분배에 기여하거나 의무적 참여를 수반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²⁾ 이러한 정의에 따라 사회지출은 관련 프로그램의 관리·운영(수급자

1) 우리나라 자료에 대하여 통계청 승인을 받은 공식 통계명은 “한국의사회복지지출”이다.

2) OECD.(2019). The OECD SOCX Manual-2019 Edition: A guide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 8.

등록, 급여 행정, 조사, 평가 등) 과 관련한 행정비용은 제외하지만, 현물급여를 구성하는 인건비 간접비 등은 포함하고 있다. OECD 기준에 따른 사회지출에서 사회적 목적은 (1) 노령 (2) 유족 (3) 장애 관련 혜택 (4) 건강 (5) 가족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7) 실업 (8) 주거 (9) 기타 사회정책 9개 정책 영역으로 구분된다. 사회지출은 또한 제공 기관에 따라 공공사회지출과 민간사회지출로 구분된다. OECD 별도로 조세제도가 사회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적 목적의 조세혜택(TBSPs: 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을 반영한 순사회지출(Net Social Expenditure)도 포함한다. 여기서 사회적 목적의 조세혜택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조세체계를 통해 사회보장 정책의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지출로 분류될 수 있는 재정이 전과 동일한 정책 기능을 수행하거나, 민간 부문에서의 혜택 제공 촉진을 목표로 하는 세금 감면, 공제, 과세이연³⁾ 등의 조세지출로 정의한다. 다만, 영국이나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이나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과 같은 환급형 조세지출은 사회적 목적의 조세혜택 항목이 아니라 직접적인 사회지출로 관련 영역에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가족에 대한 공공사회지출(이하 ‘가족지출’)은 아동·가족 지원과 관련한 정부지출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OECD

가 정의하는 가족지출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구원 부양과 관련된 각종 지원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과 관련한 지출이나 아동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의 경우 가족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건강과 주거라는 정책 영역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지출로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지출과 교육지출을 구분하여 가족 영역의 공공사회지출에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보육은 포함하되, 초등학교 이상 재학 중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지출은 제외된다. 가족지출은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현금과 현물로 유형을 구분하는데, 아동양육가구에 대한 현금이전은 아동수당,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공적 소득지원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녀장려금(CTC) 등 환급형 조세지출을 포함한다. 아동양육가구에 대한 현물지원은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보조금, 양육부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한 공공보육 지원, 청소년 거주시설 지원에 대한 공공지출, 취약가정을 위한 시설 기반 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등의 가족지원이 포함된다.

2) OECD 가족데이터베이스

한편, OECD가 가족정책의 국제 비교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가족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는 아동·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의 범위를 지표에 따

3) OECD. (2019). The OECD SOCX Manual (2019 Edition): A guide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라 달리 파악한다. 가족데이터베이스가 파악하는 가족혜택에 대한 공적지출(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은 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의 가족지출과 가족지출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족 관련 조세지출(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 자녀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포괄하여 현금지출, 현물지출, 가족에 대한 조세혜택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한다. 이와 별개로 가족데이터베이스의 아동 연령별 공적지출(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은 가족지출에서 제외하고 있는 학생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까지 모두 포괄하며,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 보육지원, 기타 현물지원, 교육지원 4가지 항목에 대한 아동 연령별 지원 수준을 제시한다.⁴⁾

나. 유럽연합의 아동·가족 예산의 기준과 지출 범위

유럽연합은 EU 통계청(Eurostat)과 공동으로 개발한 유럽사회보호통계시스템(ESSPROS: 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Social Protection Statistics)을 통해 회원국들의 사회보장지출을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197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EU 통계청의 법적 근거 도입 제안에 따라 2007년 유럽통합사회보호통계시스템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정(EC Regulation)제458/2007호와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집행위원회규정(Commission Regulations)⁵⁾이 마련되었다. 이 시스템은 사회보장과 관련한 재정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보호혜택과 재원조달 구조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다루는 지출은 <표 2>와 같이 4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호혜택은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과 현물지원으로 OECD가 정의하는 사회지출의 개념을

[표 2] ESSPROS 지출구조

지출 항목	설명
1. 사회보호혜택(Social Benefit)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 혜택
2.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s)	제도 운영을 위한 관리비용
3. 다른 제도로의 이전(Transfer to Other Schemes)	다른 제도로의 자금 이전
4. 기타 지출(Miscellaneous Expenditure)	기타 운영비, 세금, 대출 이자 지급 등

출처: "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social protection statistics" (ESSPROS, 2019 edition), Eurostat, 2019, pp. 34-36. 기초로 작성.

4) OECD. (n.d.)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family-database.html>, 접속일 2025.2.5.

5) 2007년 11월 15일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322/2007(2007년 11월 15일);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0/2008(2008년 1월 8일).

공유한다. 다만 사회보호의 기능은 1) 질병/건강 관리(Sickness/Health care), 2) 장애(Disability), 3) 노령(Old age), 4) 유족(Survivors), 5) 가족/아동(Family/Children), 6) 실업(Unemployment), 7) 주거(Housing), 8)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not elsewhere classified)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제외한 8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행정비용은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사회보장 기여금의 징수, 수급자 등록, 급여의 지급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제도 운영 및 관리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OECD 공공사회지출과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 제공과 같이 현물급여를 구성하는 행정비용은 사회보호혜택으로 분류된다. 한편, 사회보장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감독하는 비용이나 공공보건 캠페인과 같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집단적 사회보호서비스 비용, 사회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부 운영비용은 이 시스템의 행정비용 항목에서 제외된다. 다른 사회보장제도로의 자금 이전과 기타 운영비, 세금, 대출 이자 지급 등의 기타 지출도 각각의 항목으로 별도 관리된다. 이 시스템 역시 조세제도를 고려한 순사회혜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조세혜택과 관련한 정보

[표 3] ESSPROS 가족/아동에 대한 사회보호혜택

구분	설명 및 예시
현금(Cash Benefits)	아동양육가구에 직접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아동수당 등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정기적 지원금
출산·육아급여(Maternity/Faternity Allowances)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근로자의 법정 출산휴가와 연계되며 출산 및 육아휴직 중 부모의 소득을 보전하는 지원금
입양지원금(Adoption Grants)	입양 절차 등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입양 가정에 지원하는 보조금
기타 현금 지원(Other Cash Benefits)	한부모가정 지원금이나 특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특별가족 지원금과 같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추가로 제공되는 지원금
현물(Benefits in Kind)	아동양육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물품 지원
주거지원(Accommodation Support)	정부 지원 임대주택이나 주택 구입 보조금 등 저소득 가정을 위한 공공주택의 제공이나 주거비 보조금 지급
보육·돌봄 지원(Childcare Services)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보육비 보조 또는 무상보육 서비스 제공
가정 지원(Home Help Services)	아이돌봄비 지원, 장애 부모를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 가정 내 아동돌봄 및 가사지원 서비스
기타 지원(Other Benefits in Kind)	교통비 할인(학생 및 아동교통패스), 문화 및 스포츠활동 지원(무료 박물관 입장, 체육활동 보조금) 등 아동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포함

출처: "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social protection statistics" (ESSPROS, 2019 edition), Eurostat, 2019, pp. 68-69. 기초로 작성.

의 처리는 OECD 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하게 조세환급(Payable tax credits)에 한해서는 현금혜택으로 기록하고 세금감면(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은 공공예산의 직접적인 지출이 아니라고 파악하여 시스템의 공식 지출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EU가 정의하는 가족/아동에 대한 사회보호혜택의 개념과 범위는 OECD의 가족에 대한 공공사회지출과 동일하며, <표 3>에 구체적으로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OECD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 아동·가족 예산의 정의와 분류 기준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아동·가족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정의하는데, OECD와 유럽연합의 기준은 사실상 동일하다. 통계 목적에 따라 지출 범위를 교육 지출과 조세 환급 이외의 조세지출까지 확장할 수 있음을 보았다. 이 글에서는 OECD와 유럽연합이

공통적으로 파악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아동·가족 예산을 18세 미만 아동 또는 이들을 양육하는 가구에 현금이나 교육 서비스를 제외한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재정사업 이외 아동양육과 관련한 조세환급, 즉 자녀장려금까지 예산으로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세부사업 단위 예산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급여의 유형이나 내용을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주요 급여의 자격 요건과 지원 목적에서 연관성을 갖는 사업을 분류하여 분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3 2025년 아동·가족 예산 분석

가. 개요

2025년 국가 총지출과 조세지출예산서에 반영된 아동·가족 예산은 급여의 제공과 거리가 먼 관

[표 4] 2025년 아동·가족 예산 요약

(단위: 억 원, %)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증감		
		예산안(B)	확정예산(C)	국회조정 (B-A)	전년대비 (C-A)	(C-A)/A* 100
총지출(A)	6,566,182	6,774,107	6,733,016	-41,091.4	166,833	2.5
고용·복지·보건(B)	2,381,658	2,490,156	2,487,466	-2,689.3	105,808	4.4
아동·가족 예산	194,909	207,839	207,434	-405.5	12,524	6.4
자녀장려금 제외 예산(C)	184,099	197,939	197,534	-405.5	13,434	7.3
C/A*100	2.8	2.9	2.9	1.0	8.1	-
C/B*100	7.7	7.9	7.9	15.1	12.7	-

출처: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총지출)", 기획재정부, n.d.,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fiscaldata.go.kr>, 접속일 2025. 2. 2. 기초로 작성;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대한민국정부, 2024. 9. 기초로 작성. 접속일 2025. 2. 2.

리·운영비, 정책 수립, 평가, 조사 등과 관련한 사업을 제외하고 58개 세부사업과 1개 조세지출 항목(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전년 대비 약 1조 2524억원 증가한 20조 7434억원이 배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녀장려금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아동·가족 예산은 19조 7534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여 고용·복지·보건 분야에 비해 1.6배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전년 대비 0.1%p 높아졌고, 고용·복지·보건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p 증가한 7.9%를 차지한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감액된 사업은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21.5억원) 과 아이돌봄지원(△384억원) 2개로, 고용·복지·보건 분야 감액예산 중 15.1%를 차지한다. 총량적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가족 예산의 증가는 전반적인 재정압박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 범주별 자원배분 및 주요 사업예산 변화

〈표 5〉는 총 59개 아동·가족 지원사업을 7개 범주로 구분하여 보여 준다.

[표 5] 2025년 아동·가족 예산

(단위: 억 원)

부처명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증감	
	회계명	분야명	세부사업명		예산안 (B)	확정예산 (C)	국회조정 (B-A)	전년대비 (C-A)
합계				194,915	207,845	207,439	-405.5	12,524
자녀장려금 제외 계				184,105	197,945	197,539	-405.5	13,434
1. 아동수당 및 보육 연계 현금성 지원				51,082	41,714	41,714	0.0	-9,369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아동수당지급	21,115	19,588	19,588	0.0	-1,526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28,887	21,353	21,353	0.0	-7,534
교육부	일반회계	교육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1,081	773	773	0.0	-308
2. 출산·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				27,483	44,351	44,351	0.0	16,868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177	218	218	0.0	4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사회복지	고용안정장려금	2,338	3,909	3,909	0.0	1,57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사회복지	모성보호육아지원	24,968	40,225	40,225	0.0	15,256
3. 기타 현금성 지원				17,669	17,201	17,179	-21.5	-489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사회복지	입양아동가족지원	202	213	213	0.0	11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1,267	1,532	1,510	-21.5	243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사회복지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33	27	27	0.0	-6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사회복지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5,356	5,528	5,528	0.0	172
기획재정부/국세청	-		자녀장려금(조세지출)	10,810	9,900	9,900	0.0	-910

[표 5] 계속

부처명	회계명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증감	
		분야명	세부사업명		예산안 (B)	확정예산 (C)	국회조정 (B-A)	전년대비 (C-A)
4.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4,611	4,427	4,427	0.0	-184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기금	사회복지	모자보건사업	245	276	276	0.0	32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기금	사회복지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78	77	77	0.0	-1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	42	46	46	0.0	4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443	435	435	0.0	-8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첫만남이용권지원	3,804	3,593	3,593	0.0	-211
5. 보육·돌봄 지원				88,506	94,504	94,120	-384.0	5,613
경찰청	일반회계	공공질서및 안전	경찰관서직장보육시설운영(민자)	171	198	198	0.0	27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사회복지	직장어린이집지원	1,121	1,079	1,079	0.0	-43
교육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교육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32,106	31,020	31,020	0.0	-1,086
교육부	일반회계	교육	어린이집교원양성지원사업	13	13	13	0.0	-0
교육부	일반회계	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10	0	0	0.0	-10
교육부	일반회계	교육	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	18,863	19,619	19,619	0.0	756
교육부	일반회계	교육	시간제보육지원	250	280	280	0.0	30
교육부	일반회계	교육	영유아보육료지원	26,731	32,400	32,400	0.0	5,669
교육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교육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세종)	1	1	1	0.0	0
교육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교육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제주)	2	2	2	0.0	0
교육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교육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자율)	74	83	83	0.0	9
교육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교육	어린이집확충	417	267	267	0.0	-150
국방부	일반회계	국방	군어린이집운영지원	627	644	644	0.0	17
국세청	일반회계	일반· 지방행정	직장어린이집운영	33	33	33	0.0	0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회복지	다함께돌봄센터지원(세종)	5	6	6	0.0	1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세종)	7	8	8	0.0	1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회복지	다함께돌봄센터지원(제주)	7	6	6	0.0	-1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제주)	35	39	39	0.0	5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회복지	다함께돌봄센터지원(자율)	565	640	640	0.0	74

[표 5] 계속

부처명	회계명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증감	
		분야명	세부사업명		예산안 (B)	확정예산 (C)	국회조정 (B-A)	전년대비 (C-A)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자율)	2,137	2,415	2,415	0.0	278
보건복지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지원	339	313	313	0.0	-26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아이돌봄지원	4,679	5,134	4,750	-384.0	72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사회복지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315	304	304	0.0	-11
6. 아동·가족 보호 및 피해예방 관련 지원				2,650	2,650	2,650	0.0	0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사회복지	아동복지시설가능보강	48	46	46	0.0	-2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사회복지	아동복지시설아동치료, 재활지원 사업	20	21	21	0.0	1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가정위탁지원 운영	63	57	57	0.0	-6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	486	491	491	0.0	5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보호대상아동발달지원	10	10	10	0.0	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523	469	469	0.0	-54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사회복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52	58	58	0.0	6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성범죄자신상공개및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54	55	55	0.0	1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80	83	83	0.0	4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청소년치료재활센터건립	37	57	57	0.0	20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운영 지원	96	94	94	0.0	-2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사회복지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	49	49	49	0.0	1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사회복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721	718	718	0.0	-3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사회복지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309	331	331	0.0	22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사회복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	103	110	110	0.0	7
7. 기타 지원				2,908	2,992	2,992	0.0	8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 기금	문화및관광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1,203	1,313	1,313	0.0	109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사회복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1,461	1,452	1,452	0.0	-9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가족역량강화지원	28	21	21	0.0	-7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148	164	164	0.0	16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사회복지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67	42	42	0.0	-25

주: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외 다른 내역 사업비도 반영된 예산임.

2)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수당(차상위) 내역을 구성하는 장애(아동)수당 예산은 제외되어 있음.

3) 단수 조정에 따라 각 셀의 합계가 다를 수 있음.

출처: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총지출)", 기획재정부, n.d.,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fiscaldata.go.kr>, 접속일 2025. 2. 2. 기초로 작성;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대한민국정부, 2024. 9. 기초로 작성. 접속일 2025. 2. 2.

1) 아동수당 및 보육연계 현금성 지원

아동수당 및 보육연계 현금성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수당지급과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그리고 교육부로 이관된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3개로 구성된다. 이들 3개 사업의 2025년 예산은 4조 17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 감소(△ 9369억원)하였다. 지급 연령이나 지원단가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수 감소로 2025년 아동수당 예산이 전년 대비 7.2%(△ 1526억원) 감액되었고, 가정양육수당지원 예산도 308억원 줄었다.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감액되었는데(△ 7534억원), 이는 저출생 요인과 더불어 2024년 6월부터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2024년 부모급여(영아수당) 예산에 포함되었던 영유아보육료(0~1세)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 편성된 것에 따른 결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전체 아동·가족 예산(20.7조 원)에서 차지하는 3개 사업의 예산비중은 2024년 26.2%에서 2025년 20.1%로 크게 낮아졌다.

2) 출산·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

출산·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지원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와 고용보험기금 사업인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및 모성보호육아지원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들 3개 사업의 2025년 예산은 4조 4351억원으로 전년 대비 61.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아동·가족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4.1%에서 2025년 21.4%로 큰 폭의 증가(7.3%p)를 보였다. 동 범주를 구성하는 3개 사업 모두 전년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났는데, 특히 모성보호육아지원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이 포함된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예산의 증가(각각 1조 5256억원과 1571억원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 실업계정 재원을 사용하는 모성보호육아지원은 6개 급여사업(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로 구성된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의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기여금을 납부한 근로자이다. 한편, 고용안정장려금의 핵심 내역사업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은 산전후휴가·육아휴직자 또는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의 업무 공백에 대한 사업주 비용을 보상하는 4개 지원금으로(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구성되는데, 모성보호육아지원과 달리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사업 규모별로 0.2~0.85%)로 조성되는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 재원을 사용한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아동연령 확대 및 사용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표 6] 2025년도 모성보호육아지원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단위: 백만 원)

제도	구분	개선사항	'25년 예산
①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부모 각각 3월 이상 육아휴직 또는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 부모)	3,402,970
	분할횟수	2회 → 3회	
	급여인상	월 최대 150만원 → (1~3월250만원,4~6월200만원,7월~160만원)	
	사후지급	사후지급금 25% 공제 → 사후지급 방식 폐지	
	통합신청	출산·육아휴직 각각 신청 → 통합 신청(생후 18개월 이내 사용예정)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8세(초2) → 12세(초6)	233,521
	기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배	
	최소 사용기간	3개월 → 1개월	
	급여지원	주 10시간 단축분 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 → 220만원	
③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청구기한	10일 → 20일 / 90일 → 120일(사용기한)	24,213
	분할횟수/ 급여지원	1회 → 3회 / 5일 → 20일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주지원)	④ 육아휴직 지원금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신설 (남성 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초 3인까지 휴직기간 동안 월 40만원 지급)	119,352
	⑤ 대체인력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원 → 월 120만원으로 인상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에만 지원 → 육아휴직까지 확대	
	⑥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에만 지원 → 육아휴직까지 확대	35,235

출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부처별 V)”,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11., p. 272.

〈표 6〉에 정리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예산을 크게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3) 기타 현금성 지원

기타 현금성 지원은 입양아동, 시설보호 아동, 저소득가구 아동, 저소득 한부모 아동 등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의 성장·양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5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는 현금형 조세지출인 자녀장려금이 포함된다. 명목소득 증가와 아동수 감소 예상에 따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녀장려금이 전년 대비 910억원 줄어든 9900억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이들 5개 사업의 예산은 1조 7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아동·가족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9.1%에서 2025년에는 8.3%로 0.8%p 낮아졌다. 사업별로 보면, 2025

년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43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뿐만 아니라 차상위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과 더불어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서울시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까지 신규로 포함하는 등의 지원대상 확대에 기인한다. 여성가족부 소관의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생에서 초중고생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 사항이 반영되어 2025년 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172억원 늘어났다. 한편,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예산은 청소년한부모 가구수 감소 등의 이유로 전년도보다 약 6억원 감액 편성되었다.

4)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모자보건사업,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지원 5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들 5개 사업의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4%(△184억원) 줄어든 442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난임부부 및 성·생식건강 증진 지원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약 32억원 증액되었으나, 이 범주에서 가장 큰 예산비중(81.2%)을 차지하는 첫만남이용권지원이 저출생에 따른 아동수 감소로 211억원 감액되었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이 전체 아

동·가족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대비 0.3%p 하락한 2.1%로 나타난다.

5) 보육·돌봄 지원

보육·돌봄 지원은 교육부 소관의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관련 10개 세부사업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다함께돌봄 및 지역아동센터지원 관련 7개 세부사업, 여성가족부 소관의 아이돌봄지원 및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그 외 4개 부처의 직장어린이집운영 등 총 2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보육·돌봄 지원에 대한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5613억원 증액된 9조 4120억원으로 전체 아동·가족 예산의 45.4%를 차지한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먼저 동 영역에서 영유아보육료지원 다음으로 예산 비중이 높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아교육비지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 대상 아동 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086억원 감액된 3조 1020억원이 2025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17년 설치된 이후 2회 연장되어 2025년 말 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과 연계되어 관련 재원의 분담 방안 논의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비지원과 달리 2025년 영유아보육료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1.2%(5669억원) 증액된 3조 2400억원이 편성되었다. 취원 대상 아동수 감소가 반영되었음에도 영유아보육료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69.4%→70.2%)과 최근 5개 연도 평균 미지급

금을 반영함에 따른 것이다. 이 범주에서 세 번째로 예산비중이 큰 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의 2025년 예산은 인건비 지원 단가 인상(3%)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고보조율 인상(51.8%→52.8%)을 반영하여 756억원 증액된 1조 9619억원이 배분되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475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2억원 늘어났다. 당초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고 '다형' 및 취약아동가구(6-12세)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상향을 반영하여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약 10%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아이돌보미 인력 연계 미흡에 따른 불용을 고려하여 384억원이 감액되었다.

2650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데 전체 아동·가족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지난해보다 0.1%p 낮아졌다. 주요 사업의 예산 변화를 보면, 먼저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의 2025년 예산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실적 저조에 따른 목표치 하향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10.3%(△54억원) 감액된 469억원이 확정되었다. 여성가족부 소관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예산은 시설 기능보강과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11.5% 증액되었고,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7.2%, 22억원 증액), 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7.2% 7억원 증액), 청소년치료재활센터건립(54.6% 20억원 증액) 등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6) 아동·가족 보호 및 피해 예방 지원

아동·가족 보호 및 피해 예방 지원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아동치료, 재활 지원 2개 사업과 보건복지부 소관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등 4개 세부사업, 그리고 여성가족부 소관의 9개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총 15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들 15개 사업의 2025년 예산은

7) 기타 지원

기타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⁶⁾과 여성가족부 소관의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등 총 5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2025년 기타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84억원(2.9%) 증가한 2992억원으로 전체 아동·가족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지난해에 비해 0.1%p 낮아

6) 연도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			
	계획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사용인원	계획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사용인원
'21년	29,639	27,589	93.1	60,099	3,136	1,074	34.2	3,305
'22년	47,138	39,218	83.2	71,897	6,160	3,051	49.5	6,738
'23년	73,599	59,089	80.3	92,028	11,172	9,142	81.8	15,617
'24년(8월 말)	100,799	45,480	45.1	105,989	18,480	10,672	57.7	23,162

출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 11., p. 278.

졌다. 이 범주에서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의 2025년 예산은 145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9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비용 순감 등이 반영된 것이다. 다음으로 예산비중이 높은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 및 장애인(소득 무관 만 5~69세)에게 월 단위로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아동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2021년~2023년 8월 말까지 집행 실적을 보았을 때, 일반(저소득층 아동)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인원이 평균 87%를 차지함에 따라 아동·가족 예산으로 포함하였다.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은 1인당 월 최대지원금 인상(일반 10만원→10.5만원)과 지원 인원 확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9억원 증액된 131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여성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의 2025년 예산은 물가 인상을 고려한 지원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0.8% 증액한 164억원으로 확정하였다.

4 나가며

OECD와 유럽연합의 아동·가족에 대한 공적지출 개념을 적용했을 때, 2025회계연도 국가재정에 반영된 아동·가족 예산은 58개 세부사업과 1개 조

세지출 등 총 59개 지출항목에 대하여 2024년에 비해 약 1.3조원 증가한 20.7조원이 배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총량적 관점에서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복지·보건 분야에 비해 더 높은 예산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7개 범주로 구분해서 세부적인 예산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재원의 투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비해 사업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총 24개로 감액규모는 1조 1938억원이며, 전체 감액분의 78.5%는 아동수당 및 보육연계 현금성 지원을 구성하는 3개 사업(아동수당지급,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의 예산 감소로 설명된다. 이와 관련해 특히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양육지원이 영아기에 집중되어 있고 해외사례에 비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요구로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아동수당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으나 올해 예산에는 제도 개선이 반영되지 못했다.⁷⁾ 한편, 전년보다 증액된 사업은 총 33개로 전체 증액 규모는 2조 4462억원이며, 전체 증액분의 62.3%는 모성보호육아지원, 23.2%는 영유아 보육료지원이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유아 보육료지원 예산의 증액은 주로 국고보조율 인상에 따른 결과로 실제 아동·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

7) 보건복지위원회. (2024. 8.).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p. 56, p. 130.

한 예산 증가는 모성보호육아지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달리 보면, 2025년 아동·가족 예산 증가의 상당 부분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존한다는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고려했을 때 아동·가족 예산 증가를 체감하는 집단은 전체 아동·가족의 일부에 한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어진 재정 여건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아동·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에서 아동·가족 예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합의되어 공개된 바 없으며,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룬 아동·가족 예산의 정의와 지출 범위는 활용자로나 목적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고 분석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⁸⁾ 罫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 (2024.9.).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 1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2024. 8.).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위
 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세출_지출 세부사업 예산
 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aldata.
 go.kr](https://www.openfiscaldata.go.kr), 접속일 2025. 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1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BTL) 한도액안 검토보고(부처별 V).

- Eurostat. (2019). *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social protection statistics—* (ESSPROS, 2019 edition).
 OECD. (2019). *The OECD SOCX Manual (2019 Edition): A guide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n.d.) *OECD Family Database*. [https://
 www.oecd.org/en/data/datasets/oecd-
 family-database.html](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family-database.html), 접속일 2025. 2. 5.

8) 현재 정부는 OECD에 한국의사회복지지출 통계를 제출하고 있으나, 세부 항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글의 아동·가족 예산은 한국의사회복지지출 통계와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

Analysis of the 2025 Budget for Children and Families

Ko, Jaye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s 2025 budget allocated for 'children and families' expenditures, estimated according to OECD and EU standards, totals KRW 20.7 trillion—an increase of KRW 1.3 trillion from 2024. The fact that the children-and-families budget increased by a higher rate than did the budgets for 'employment,' 'social welfare,' and 'health,' can be taken for a positive development, not least in light of current fiscal austerity. However, a closer look at the seven subcategories of 'children and family' expenditures, as defined in the nationa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reveals the government's input to be limited. Notably, 78.5 percent of the total program-by-program cuts are concentrated in three areas: child benefits, parental allowance, and home childcare allowance. Meanwhile, of the total budget increase distributed across 33 programs, 62.3 percent goes to 'maternal and child care support' and 23.2 percent to 'infant-and-toddler care support.' However, since the budget increase for the latter program is attributed in a large measure to a recent increase in the national subsidy rate, the overall increase in the children-and-families budget is primarily driven by the expanded allocation to 'maternal and child care support,' funded by the Employment Insurance Fund. This may mean that the 2025 children-and-families budget increase, relying as it does to a significant extent on contributions paid by employees and employers, is more likely than not to benefit families left outside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Despite the unfavorable fiscal conditions, the government must take steps to expand support in a way that ensures broader coverage and tangible benefits.